



사 단 「정책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」  
법 인 대 한 병 원 협 회

수 신 의료취약지 소재 병원장

참 조 보험심사(원무)부서장

제 목 의료취약지 의료급여환자 내원시 응급의료관리료 산정 방법 안내

---

1.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-323(2016.1.14.)

2. 2016.1.1일자로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된 바,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□ 「의료급여법 시행규칙」 개정사항

[별표 1의2]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(제19조관련)

다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제1호다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. 다만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6 제1호사목 중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가목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말한다.

□ 행정해석
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에서는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및 항목에 대해 규정하고, 제2호에서는 제1호의 본인 부담률은 100분의100임을 명시하고 있음
- 신설된 제1호 다목의 단서규정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
-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의 의료급여절차를 거친 경우 응급 의료관리료를 급여항목으로 청구하여 의료급여비용총액에 산정\*하며, 본인부담은 의료급여비용총액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[별표1]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비용 제외후 산정

\*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.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(고시)  
준용

○ 동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환자의 진료비 및 응급의료관리료 본인부담

\*은 기존과 동일

\* 시행규칙 [별표 1의2] 2. 제1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분의 100. 끝.

대한병원협회



---

대리 김수한 팀장 노환우 국장 류향수

시 행 : 보험 제 2016-30 ( 2016.01.19 )

우 121-73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층 대한병원협회 / 홈페이지 :  
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54 전송 02-705-9259 ( 대표FAX : 02-705-9209 ) E-mail : kimsh@kha.or.kr